
유럽연합의 생명윤리 정책 고찰

- 유럽연합의 결의를 중심으로 -

심성은 (파리10대학-낭테르 박사과정, 정치학)

I. 들어가며

II.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배경

- 피호프 보고서
- 유럽연합 협약

III. 유럽연합의 생명윤리 결의의 내용별 고찰

A. 생명공학에 대한 입장

- 1)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
- 2) 생명윤리 관련 규제의 심화

B. 인간배아와 인간복제

- 1) 인간 배아복제의 목적과 허용의 한계
- 2)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
- 3) 인간 배아복제 규제의 확대

C. 인간의 존엄성 존중

- 1) 소극적인 입장: 여성과 제공자의 권리
- 2) 적극적인 입장: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D.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노력

- 1) 생명공학 발전 정책
- 2) 생명윤리 관련 결의 내에서의 생명공학 발전 보호 모색

IV. 유럽연합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최근 동향

V. 나오며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오늘날 생명공학이 경제, 농업, 의학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위생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자, 우리나라¹⁾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 중 생명공학이 오래 전부터 발달해온 유럽에서는 1980년 대부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²⁾.

우선 독일은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잔혹한 인체실험에 대한 영향으로 생명공학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1984년 연방법무부 산하에 벤다위원회(Benda-Kommission)를 설치, 벤다보고서(Benda-Bericht)에 의해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수정란보호법” 초안을 만들었고, 이는 1990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³⁾. 위 법은 생식계 세포조작에서부터 수정란 조작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생명윤리 법안제정에 큰 노력을 쏟았다. 1988년, 의료적 연구조건을 제한하는 “위리에-세뤼스클라(Huriet-Sérusclat)” 법안을 결의했으며, 2003년 1월 30일에는 상원에서 치료 목적을 포함한 모든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⁴⁾. 그에 반해 영국⁵⁾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규제적인 생명윤리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인간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년 11월)”⁶⁾은 인간배아 연구를 “수정 후 14일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배아 연구기간을 허용하게 되었다⁷⁾. 더 나아가 지난 1월에는 치료목적의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생명공학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명공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통일된 노력, 즉 공동된

1)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정규원,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23호.

2) 유럽 각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윤정로, “사회 속의 생명 윤리: ELSI 프로그램의 과제”, 『생명의 위기: 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서울: 푸른나무, 2001 ; ROGERS Arthur & Denis Durand de Bousingen, *Une bioéthique pour l'Europe*, Strasbourg, Les éditions du Conseil de l'Europe, 1995, pp. 25-77.

3) 1990년의 독일 유전공학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강봉식, 『독일 유전공학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4) “Le Sénat interdit le clonage thérapeutique et encadre les recherches sur l'embryon”, *Le Monde*, 2003년 2월 1일 자.

5)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켰고(1978년)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시도설이 나돌았으며(1980년 대) 세계 최초로 포유류 복제에 성공해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는(1997년) 등, 영국은 생명공학이 매우 발달된 나라다.

6)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291쪽 참조.

7) 『중앙일보』, 2001년 8월 20일 자.

생명윤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의 대표 의결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회는 1980년 대 초부터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1989년의 결의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1989년 3월 16일)”
- “시험관 및 체내 인공수정에 관한 결의(1989년 3월 16일)”
-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1993년 11월 22일)”
- “의학과 생물학 응용에 대한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에 대한 결의(1996년 10월 28일)”
- “복제에 관한 결의(1997년 4월 14일)”
-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1998년 2월 2일)”
-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2000년 9월 7일)”

본고는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1989년)”를 시작으로 최근의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2000년)”까지 이르는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중심으로 유럽의회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정책 결정의 배경을 찾아보고, 제3장에서는 생명공학의 발달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과 인간배아 및 인간복제, 인권보호와 생명윤리, 그리고 생명공학 발전을 노력 등, 결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가지 큰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I.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배경

유럽의회는 생명공학이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위생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 인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984년부터 생명윤리 관련 결의 준비에 들어갔다. 1984년에만 다섯 개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제안서를 제출해 검토한 유럽의회는 이듬 해 시민권과 법률위원회 주최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문회를 여는 등⁸⁾, 진지한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 유럽의회를 자극할 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첫 번째, 1986년 여름, 영국정부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조작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일명 GMO) 도입 허가를 내리고 관련 실험을 실행시키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차원에서도, 유럽공동체 차원에서도 유전자조작 실험의 안정성을 제한할 만한 법률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기”⁹⁾ 때문에 유럽연합은 영국의 과감한

8) “Résolution sur les problèmes éthiques et juridiques de la manipulation génétique”, *Journal officie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JO)*, n° C 96, du 17 avril 1989, pp. 165.

시도를 우려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과학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2차 계획(1987-1991)¹⁰⁾에서 비롯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자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발전에 따른 정치적, 윤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유럽의회는 1988년, 정치위원회, 여권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공공건강위원회, 환경위원회로 하여금 견해를 제시하게 하고, 1988년까지 총 열두 개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그 중 1987년에 발표된 “피호프 보고서(Viehoff Report)”¹¹⁾는 유럽의회가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준비작업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유전자조작유기체들이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문제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경제활동과 산업정책, 농업과 식량, 에너지, 연구와 기술 위원회의 견해도 함께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984년부터 1988년 말까지, 약 5년에 걸쳐 세심하게 준비를 하던 유럽의회는 1989년 3월 16일, 첫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은 유럽연합 조약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생명공학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정신은 유럽연합 조약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원칙들 중 하나다. 유럽연합의 기본조약 중 하나인 로마협약에 따르면 “유럽공동체 정책”은 “자유와 인권존중이라는 목표에 공헌해야 한다(제177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이 기본원칙에 한층 더 충실한 입장을 취한다. 이 조약은 “유럽연합은 법치국가 및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져있으며 이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제6조 제1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발전이 같은 협약들의 기본원칙들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이념적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협약의 기본

9) “Résolution sur la biotechnologie en Europe: nécessité d’une politique intégrée”, JO, n. C 76 du 23 mars 1987, 제K조 참조.

10) 1984년부터 시작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정식명칭은 “기술발전과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일명 Framework Programme)”이다. 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PF)은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증진, 유럽의 과학과 기술력 강화, 경제와 사회의 접목(3차와 4차 프로그램에 집중), 산업과 학계 그리고 각 회원국 사이의 협력고취, 젊은 과학자들의 교육과 훈련, 생명공학의 시장접근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Résolution sur la biotechnologie en Europe: nécessité d’une politique intégrée”, 위의 각주 참조.

정신에 큰 위협이 되는 생명공학 발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생명윤리 관련 결의 채택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

III. 유럽연합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내용별 고찰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럽의회가 의결한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살펴 보면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980년 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한 생명공학에 대해 일관되게 규제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세계 최초의 인간 배아복제 성공이나 양 복제 성공 등과 같은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통된 결의를 채택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발전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두 번째, 여러 논의의 대상 중, 인간복제, 특히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이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포괄적인 결의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 번째, 유럽연합의 결의들이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변모한 점을 들 수 있다. 1989년 초반의 결의가 유전자 조작 시 유전자 제공자나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의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1990년 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등, 보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에서 그 비판의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채택하는 한편, 생명공학이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생명공학의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관심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결의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규제하려는 생명윤리 관련 결의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이하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적인 입장의 변화(제A절)와 결의들에 나타난 인간배아와 인간복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결정(제B절), 생명윤리 관련 규범 기반으로서의 인간의 기본권의 위상 변화(제C절), 그리고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노력(제D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A. 생명공학에 대한 입장

생명윤리와 관련된 첫 결의를 발표하던 1989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의회는 생명공학에 대해 한결같이 규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단 초기에는 불임치료나 배아복제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반면, 1990년 대에 들어와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해 인간복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간복제 자체에 대한 결의가 생명윤리 관련 논의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 규제적 입장

1984년부터 생명윤리 관련 결의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유럽의회는 1987년에 결정

된 “유럽 생명공학에 관한 결의: 통일된 정책의 필요성”¹²⁾에서부터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 결의에서 “현재까지의 유전공학은 주로 DNA의 역할 분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않은 유전자 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무책임한 것(제G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 인식은 1989년 3월 16일에 결정된 다음의 결의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유럽의회는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¹³⁾를 통해 생명공학의 발전이 야기시킨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위생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상업화 단계만이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부터 다루고자 했다. 이 첫 번째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통해 유럽의회는 인간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제12조 제b항) 생명공학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제3자나 사회에 해를 끼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제8조). 이는 생명공학이 예방의학이나 우생학 논리에 의해 배아나 태아 상태의 아기를 취사선택하거나 인구 중 특정 계층을 사회적으로 배척, 통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제D조)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차적인 문제점으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의 GMO가 환경 및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과학적 도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제E조).

이 결의는 생명공학은 이미 우리의 사회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이므로 위 문제들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방법적인 측면은 물론 법률적인 면, 유전자분석, 노동자들의 유전자분석, 보험에 관련된 유전자분석, 유전자분석에 관한 법적소송, 체세포 유전자치료, 생식선 유전자치료, 배아에 대한 연구, 상업적, 산업적 목적의 배아이용, 냉동보관, 복제, 공상적 잡종생산, 군대에 대한 응용 및 연구, 안전문제 등,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유럽의회의 규제적인 입장은 1990년 대에 발생한 생명공학적 사건들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2) 생명윤리 관련 규제의 심화

1993년 10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메디컬 센터의 제리 홀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¹⁴⁾하자,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이에 유럽의회는 1993년 11월 22일,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¹⁵⁾를 의결하며 제리

12) “Résolution sur la biotechnologie en Europe: nécessité d’une politique intégrée”, 위의 각주 참조.

13) “Résolution sur les problèmes éthiques et juridiques de la manipulation génétique”, 위의 각주 참조.

14) “Cloning: Where Do We Draw the Line?”, *Time*, November 8 1993.

홀 박사의 시도가 불임치료와 난착상 이전의 진단, 세포핵 이전 등의 틀 안에서 행해진 실험일지라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제C조). 인간배아 복제의 확대를 염려한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들에게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입법화하도록 촉구하고 공적부분이나 사기업의 자금지원을 받는 과학자와 연구자, 의사들이 인간배아 복제에 관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제3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결의 채택들은 가속도가 붙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야기된 유럽공동체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곧 유럽의회는 생명공학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강제적인 결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1997년 2월 24일, 스코틀랜드의 로슬린연구소와 파마수티컬 프로테인 사는 성숙한 양의 세포복제에 성공, 돌리라는 양을 복제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 기술을 인간배아복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층 더 강화된 생명윤리 정책의 입법화 필요성을 느끼던 유럽의회에게는 때 마침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었다.

복제 양 돌리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4월 14일, 유럽의회는 “복제에 관한 결의”¹⁵⁾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에 따르면 로슬린연구소의 연구와 주장에 따른 인간복제는 새로운 윤리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제A조) 인간복제는 어떤 목적하에 실행된 것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제B조)고 명시했다. 또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지되어 있는 인간복제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복제든, 이는 모두 형법의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제1조, 제2조, 제3조).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인간복제 연구를 위한 유럽공동체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금지시키도록 요청했는데(제5조) 이 방법은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생명윤리 관련 규범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 중 하나다. 또 생물학, 생명공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입각한 윤리규범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유럽의회의 규제적인 반응은 1997년 말, 한 미국의 과학자가 인간복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유럽의회는 1998년 2월 2일, “인간복제에 대한 결의”¹⁶⁾를 의결하면서 인간복제는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비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제C조). 이 결의는 내부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인간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유엔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면서도 자세한 금지규약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제4조).

15) “Résolution sur le clonage de l’embryon humain”, JO, n° C 315 du 28 octobre 1993, pp. 224-225.

16) “Résolution sur le clonage”, JO, n° C 115 du 14 avril 1997, pp. 92-93.

17) “Résolution sur le clonage humain”, JO, n° 34 du 2 février 1998, pp. 164-165.

200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 정부가 의학연구, 즉 치료목적 배아복제 허가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했을 때에도 유럽의회는 그대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2000년 9월, “인간 복제에 관한 결의”¹⁸⁾를 채택한 유럽의회는 생명공학 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개방적인 영국정부를 비난하며 치료목적이든, 재생산을 목적이든, 핵 이전으로 생산된 인간 배아복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 이는 유럽연합의 공공정책과 배치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제2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정부에 대해서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고 영국국회에 대해서는 핵 이전으로 생산된 배아들을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 제안을 부결시키도록 권고했다(제3조).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띤 입법화를 요청하는 한편 모든 인간복제연구를 형법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했다(제4조).

위의 결의들에 따르면 생명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유럽의회는 규제적 입장이 갈수록 강화되어왔다. 관련 논의 중 인간복제 및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토론 대상 중 하나가 되어왔다. 때문에 생명윤리 관련 결의 내용 고찰에 있어 유럽의회는 인간복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제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 인간복제와 인간 배아복제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1998년)”의 제C조에 따르자면 “인간복제란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갖고 있는 인간배아를 만드는 일”이라 정의하며 이는 “행해진 방법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수정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복제를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럽의회는 인간복제를 다루는 결의들을 통해 인간 배아복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유럽의회 결의의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인간 배아복제의 목적과 허용의 한계

유럽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 배아복제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경우에 배아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1989년)”는 인간 배아복제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명시한 결의로서 유럽의회는 생명윤리 관련 정책에 있어 자세한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치료 목적의 인간 체세포 내의 유전자 전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단 살아 있는 인간배아나 태아에 대한 개입은 오로지 인간배아와 태아에 대한 연구나 산전진단, 치료 아기와 산모의 안녕을 추구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제32조)고 지적했다. 또 진단을 위한 죽은 태아나 배아의 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락될 수 있도록 해 배아와 태아이용에 제한을 두었다(제33조).

18) “Résolution sur le clonage des êtres humains”, Procès verbal du Parlement européen du 7 septembre 2000.

반면 이 같은 목적에서 어긋나는 인간 배아복제의 남용은 모두 금지 대상이 된다. 인공수정이나 수정된 배아의 냉동보관 그리고 여성과 남성, 아기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시험관 및 체내 인공수정에 관한 결의”¹⁹⁾에 따르면 시험관 기술을 통한 체외수정은 반드시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시험관 인공수정을 위한 배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궁 착상 용도 외에는 수정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제4조와 제5조). 더불어 체외수정 기술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특정 배아를 선별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제7조).

이 결의에서 유럽의회는 배아복제와 관련한 기증된 정자나 난자를 사용한 체내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이 원칙이 회원국 내에서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적용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제7조).

- 시험관과 체내 인공수정은 치료불가능한 불임이나 아이의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만 시술되어야 한다
- 위생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난자나 정자 기증자에게 기증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경제적 혜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인공수정 시 정자 기증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위에서 자세하게 지적된 인간 배아복제의 허용 및 금지 원칙들은 가장 최근인 2000년 9월 7일의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에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인공수정 시 필요 이상의 배아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제7조), 어떤 방법을 통해 생산되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던 간에 인간배아생산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10조). 또 회원국의 정부와 유럽의 정치기구에 대해서는 인간복제에 관련된 기술이 특허 출원을 받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전이 야기시키는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럽의회 안에 유럽의회 결의들을 바탕으로 한 한시적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유럽의회가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위원들의 임기는 각국 대통령이나 총리의 컨퍼런스의 제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2) 인간 배아의 법적지위

유럽의회는 1989년의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각 개인의 유전자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배아의 법적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는 유럽의회 회원국 내에서 배아의 태아의 산업 및 상업적 이용의 경우, 어떤 목적을 띠고 있든 모두 형법적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며(제34조) 제3

19) “Résolution sur la fécondation artificielle 《in vivo》 et 《in vitro》”, JO, n° C 96 du 17 avril 1989, pp. 171-173.

국으로부터 배아복제를 목적으로 한 배아와 태아 수입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인간 배아복제 시도를 법적 처벌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그 예로 생식선의 유전자를 다른 세포로 이전하는 행위와 조직이나 장기를 채취하기 위해 인간배아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제36조)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배아의 법적지위에 대한 항목 중 배아의 냉동보관은 유럽의회가 여러 결의에 걸쳐 다룬 항목이다.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 따르면 인간배아의 저장은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에 대해 치료를 위한 제한된 기간 내의 냉동보관만이 허용되어야 하므로(제39조) 과학적, 산업적, 상업적 목적의 배아의 냉동보관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제38조)고 명시하는 등, 냉동보관된 배아의 사후처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배아의 냉동보관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채택된 “시험관 및 체내 인공수정에 관한 결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당장 자궁에 배아 이식을 하지 못할 경우 등, 배아의 냉동보관은 배아의 생명을 구할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보관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산모의 거부나 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배아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제8조). 배아의 상업적 이용은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인간 배아복제 규제의 확대

유럽의회는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금지조치가 생명윤리 관련 결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유럽공동체 안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결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결의 내용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3년 11월 22일에 완성된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²⁰⁾는 제리 홀 박사의 인간 배아복제 실험이 일으킬 수 있는 우생학적인 문제점과 상업화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각 회원국에게 인간 배아복제 금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일단 유럽회의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의회에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를 전달하는(제8조) 한편,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컨퍼런스를 조직하고(제4조), 유럽의회 차원에서는 보고서와 청문화를 열기로 결정했다(제5조). 유럽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인간배아복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의 세계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유럽의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1996년의 “복제에 관한 결의”와 2000년의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도 인간복제의 금지 조치가 국제적인 행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 “Résolution sur le clonage de l’embryon humain”, 위의 각주 참조.

이와 같은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 관한 생명윤리 관련 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모해 왔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바로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적 입장의 기반을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 등, 기본권 존중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C. 인간의 존엄성 존중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정책들은 생명공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며 변화해 왔다. 초기의 생명윤리 관련 논의들이 생명공학의 발전이 야기시킨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위생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1990년 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생명공학의 발전이 침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 등을 보존하는 데 더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1) 소극적인 입장: 여성과 제공자의 권리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1989년)”는 생명공학의 발달이 야기시킬 문제점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유전자 제공자와 유전자 정보, 인간배아 복제의 허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이 결의가 인간의 존엄성 존중으로부터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결의가 인공수정의 주체인 여성의 권리와 유전자 제공자의 권익을 비중있게 다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때 여성의 존엄성과 결정권을 고려해야” 하며(제G조)과 법률적 틀 안에서 “인간과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한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유전자분석은 오로지 주체의 행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제공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제12조 제a항) 어떠한 경우에도 의혹의 여지가 있는 과학적, 정치적 목적,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유전자 특징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유전자 특징을 약화시키려는 우생학적 논리나 ‘표준 유전자’를 수립하려는 데에 이용될 수 없다(제12조 제b항). 또 유전자 지도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사립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유전자를 평가, 기록, 수집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제17조)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는 제공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자신이 제공한 유전자분석 결과 밝혀진 자기의 유전정보를 알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연구의 결과 밝혀진 자기의 유전정보를 모르고 있을 권리 역시 보유하고(제12조 제a항) 있으며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구결과를 제공자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공자의 유전자 정보는 제공자의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이는 건강과 직접적 연관을 지닌 건강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 정보는 보험회사에 공개되지 않으며(제19조) 보험회사 직원 역시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유전자 조사나 조사결

과 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제20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판사가 특별요청을 하는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전자분석결과를 법정소송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제21조).

같은 날 의결된 “시험관 및 체내 인공수정에 관한 결의”에서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포드 씨의 결의 제안(doc. B2-1665/85)”과 “유럽의회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촉구한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의 권리에 대한 연간보고서수립에 관한 마담 프라운-모제르²¹⁾의 결의 제안(doc. B2-1402/87)” 등에서도 생명윤리의 출발점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2) 적극적인 입장: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1990년 대에 생명공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자 유럽의회의 생명윤리에 대한 입장 역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3년 10월, 제리 홀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유럽의회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인간복제는 인간존중에 위배”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근거를 찾았다²²⁾. 그 후에도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채택하던 유럽의회는 1996년 10월 28일, “의학과 생물학 응용에 대한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에 대한 결의”²³⁾를 의결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 결의로써 유럽의회는 생물학, 생명공학 그리고 의학부문이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규범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생물학과 생명공학, 의학분야²⁴⁾와 관계된 윤리규범을 수립해야만 하며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제2조)”고 명시했다. 만약 유럽연합의 협약들 때문에 생명윤리 관련 규범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의 협약들까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윤리 규범수립을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결의에서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열두 조항에 걸쳐 정리하고 있다(제6조).

-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실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적 실험도 이루어질 수 없다²⁵⁾.

21) Mme Dr. Braun-Moser, 유럽의회의 독일 기독교민주당 대표로 활동했다.

22)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결의”, 제C조, 제1조.

23) “Résolution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dignité de l’être humain à l’égard des applications de la biologie et de la médecine”, JO, n° C 320 du 20 septembre 1996, pp. 268-269.

24) 인권과 의료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Rose-Marie Lozano, *La protec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omaine de la biomédecin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25) 이 조항에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인정되는데 피실험자의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적 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의학적 실험이 피실험자의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그리고 실

-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인 것이며, 장애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의사결정권이 주어진다.
- 인간배아나 태아, 그리고 태아세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화될 수 없다.
- 실험을 목적으로 한 배아생산을 포함해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활동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 유전자 실험의 결과는 보험회사나 그 직원 등의 개인이나 기관에게 전달될 수 없다. 단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약은 인체의 어떤 장기나 세포도 구매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유전병이나 유전적 소질의 발현을 예견하기 위한 실험은 심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행동 특성을 예견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유전자 실험 정보로 보험업자 등이 차별이나 취사선택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려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압력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유럽의회의 이같은 노력은 이후의 결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회는 1997년에 의결된 “복제에 관한 결의”에서 양 복제실험으로 촉발된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해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유럽의회는 “인간복제 시도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인종차별적이며 우생학적인 취사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또 인간복제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실험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제B조).

1998년의 “인간복제에 대한 결의”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복제는 불임치료나 착상 전 진단, 세포이전 등,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도 없고 수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 유전자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제C조). 또 과학적 연구는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로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제D조). 이어 1997년 “인간복제에 대한 결의”에서는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 유전자를 가질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1996년에 채택된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대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에 대한 결의”²⁶⁾를 각 회원국들이 조인하도록 촉구했다.

2000년에 의결된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회원국들의 헌법에 선포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어 회원국들의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제A조). “인권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생활에 대한 존중”은 유럽연합의 “정치 및 입법활동에 있어 영속적인 목적”임을 재확인하며 생명윤리 관련 결의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리고 모든 인간의 가

험이 피실험자의 동의 하에서는 실시될 수 없지만 피실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26) “Résolution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dignité de l’être humain à l’égard des applications de la biologie et de la médecine”, 앞의 각주 참조.

치들이 생명공학의 발달보다 우위에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제1조).

그러나 유럽의회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인간복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려는 노력만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큰 공헌을 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명공학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D.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노력

유럽의회는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채택하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관심 또한 늦추지 않았다. 이는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몇몇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생명공학 발전 자체를 위한 결의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결의로는 “유럽 생명공학에 관한 결의: 통일된 정책의 필요성”과 “생명공학 발전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회의의 지침제안에 대한 유럽회의의 의견: 입법 결의”,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에 관한 결의”를 들 수 있다.

1) 생명공학 발전 정책

유럽회의의 통일된 생명윤리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 왔다. 1986년 3월 23일의 “유럽 생명공학에 관한 결의: 통일된 정책의 필요성”²⁷⁾은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에 맞서 세계시장을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 프로그램을 갖추어야(제1조)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명공학 연구를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시도(제 A조)”와 “유럽위원회에 대해 생명공학 프로그램의 개정(제1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생명공학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분야들(암이나 심장마비 등)에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제7조) 더 나아가서는 농업분야와 인접분야(종자생산 및 1차산업의 국제무역)의 발달에도 큰 공헌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제19조).

다른 생명공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명정보학분야에서는 ESPRIT 프로그램²⁸⁾의 책임자들과 연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형성(제16조)하도록 하고 건강과 농업분야에서는

27) “Résolution sur la biotechnologie en Europe: nécessité d’une politique intégrée”, 이전의 각주 참조.

28) 유럽위원회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ESPRIT 프로그램(ESPRIT : European Strategic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은 유럽공동체 단위의 프로젝트로 R&D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책들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1979년 벨기에 출신의 E. Davignon이 산업담당 집행위원으로 취임하면서 구상되기 시작, 1982년 유럽위원회의 각료이사회에 계획안이 제출된 후 논의를 거쳐 1983년 7월에 이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ESPRIT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Union européenne, Commission européenn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service des entreprises: des résultats du programme esprit*, Luxembo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1996.

1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아래에서 이루어진 BAP 프로그램과 2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아래에서 이루어진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의 협력을 요청(제23조)하고 있다. 또 발전된 생명공학의 혜택을 입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과 유럽내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 외로는 지중해 국가와 제3세계 국가 등이 있음을 고려하도록 제의(제21조, 제22조)해 유럽 내외의 평등한 생명공학 발전에도 신경을 썼다. 또 불법적인 생명공학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유럽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특허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제24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생명공학의 상업화, 산업화 위협을 최소화하고 생명공학의 개발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를 느껴, 1997년 9월 22일, “생명공학 발전의 법적 보호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회의의 지침제안에 대한 유럽회의의 의견: 입법 결의”²⁹⁾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내에 효율적이고 통일된 입법화,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법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생명공학을 생명윤리 원칙 안에서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조작으로 변종동식물들의 특허가능조건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단 개발이나 구성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제9조). 또 이종 간의 동식물 변종과 변종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사용(제2조 제2항)과 자연상태에서 발견된 각 구성과 발달 단계의 인간의 신체는 특허가능대상에서 제외(제3조 제1항)되지만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왔거나 특정한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한 요소는 이것이 본래 자연적인 요소와 다르더라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제3조 제2항). 총 18조로 이루어진 이 결의는 특허가 가능한 변종 동식물들을 정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유럽의회는 2001년, 생명공학의 미래상을 제시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에 관한 결의”³⁰⁾는 생명공학이 중요한 경제분야임을 인식하고(제2조) 이것의 발달을 지원(제1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과 역동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 목표(제A조)를 둔 이 결의는 생명공학 분야 외에도 연구, 산업과 취업, 건강, 환경 및 농업, 국제분야, 공공정보와 토론 등, 생명공학과 관련분야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속적인 생명공학 연구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 및 회원국 내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제간 연구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제9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관련해서는 박사 학위자 배출을 늘리는 등 생명공학 관련 학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를 요청하고(제14조) 젊은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29) “Résolution législative portant avis du Parlement européen sur la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ve à la protection juridique des inventions biotechnologiques”, JO, n° C 286 du 22 septembre 1997, pp. 87-188.

30) “Résolution du Parlement européen sur l’avenir du secteur de la biotechnologie”, n° C 343 du 5 décembre 2001, pp. 292-300.

장학금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제11조).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했다(제13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우수 연구원과 관리자 및 경영자를 영입하고 중소기업이 유럽공동체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제18조). 생명공학산업이 인류의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판단한(제23조) 유럽의회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운 약품개발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검사와정을 만들기로 하고(제25조) 새로운 상품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약품시장은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제27조) 결론을 내렸다. 농업분야의 경제적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생명공학의 응용으로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평가한(제30조) 유럽의회는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제31조). 더불어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해 수자원과 농업 및 환경분야에 생명공학의 응용을 촉구하는(제41조) 한편, 계속해서 지적되는 유전자조작생산물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절차를 수립(제40조)하기로 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생명공학 지원정책 외에도 생명공학이 제3세계와 경제개발도상국의 농업, 환경,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제47조)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생명공학 발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생명공학발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제48조). 위의 생명공학의 미래를 위한 유럽의회의 결의를 알리기 위해 회원국의 교육과 산업현장에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면서(제55조) 회원국과 유럽위원회에 대해 생명공학 이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공공토론회와 심포지엄들을 개최하도록 권고했다(제58조). 이 결의는 크게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계와 산업분야에 대한 잠재적 혜택을 고려해 각 학계 및 산업분야 사이에, 그리고 유럽과 제3세계 사이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협력적인 미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생명윤리 관련 결의 내에서의 생명공학 발전 보호 모색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시도는 생명윤리 관련 결의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결의”³¹⁾에도 계속되어 유전자 분석으로 “치료와 예방, 진단의 개선(제D조)”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같은 날 결정된 시험관 및 체내 인공수정에 관한 결의”에서도 생명공학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적법한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제B조)고 인정하고 있다.

“복제에 관한 결의(1997년)” 역시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인간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나친 생명윤리 규제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31) “Résolution sur les problèmes éthiques et juridiques de la manipulation génétique”, 위의 각주 참조.

내용으로는 단백질과 약품, 백신 생산을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는 몇몇 질병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제12조)고 인정하며 지나친 경계심이나 흥미위주의 감정적 동요로 생명공학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기로 했다(제C조).

1998년에 결정된 “인간복제에 대한 결의”³²⁾에서도 유럽의회는 인간복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과학적인 연구는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명공학의 발전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제D조). 이는 생명윤리의 제재가 생명공학의 발달을 저해한다면 인류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의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학적 치료 및 과학연구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원할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IV. 유럽의회 생명윤리 관련 결의의 최근 동향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유럽의회 결의들을 살펴본 결과, 유럽의회는 상황에 맞춘 생명윤리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유럽의회의 노력은 2000년 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변모해왔다. 최근의 생명공학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유럽의회의 논의는 보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의 생명윤리 관련 규범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윤리적, 법적, 환경, 생태, 건강 문제 등, 생명공학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포괄해오던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논의가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 회원국 국민들의 식생활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GMO에 대한 논의와 의료부분에 대한 인간 세포 및 조직 응용 치료법을 들 수 있다. 관련 규칙 및 지침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GMO의 표기와 생산과정, 그리고 유전자조작유기체로 만든 인간의 식품이나 동물 생산품에 대한 생산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회의의 규칙의 수정 제안”³³⁾
- “인간 세포와 조직의 배포와 저장, 변형, 조절, 획득, 기부를 위한 안전기준과 품질규격에 대

32) “Résolution sur le clonage humain”, 위의 각주 참조.

33) “Proposition modifiée de règ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concernant la traçabilité et l'étiquetage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et la traçabilité des produits destinés à l'alimentation humaine ou animale produits à partir d'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et modifiant la directive 2001/18/CE”, JO, n° C 331 E du 31 décembre 2002, pp. 308-312.

한 유럽의회와 유럽회의의 지침 제안”³⁴⁾

이 중 기존 지침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첫 번째의 수정 제안에 따르면 모든 GMO 생 산품(GMO를 응용한 생산물 포함)은 모든 상업화 단계에서 GMO임을 표기해야 하며 또 이를 응용한 생산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공되었는 가를 명기해야 한다. 이를 표기 하는 방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GMO의 단기적, 장기적 안정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지금, 회원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6월에 제출된 “인간 세포와 조직의 배포와 저장, 변형, 조절, 획득, 기부를 위 한 안전기준과 품질규격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회의의 지침 제안” 역시 실생활에 바 로 응용될 수 있는, 즉 ‘보다 실용적’으로 변모한 유럽의회의 논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이 지침 제안은 인간의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환자들은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침 제안이 채택될 경우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럽의회 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국제협약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6월에 제출된 “G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칙 제안”³⁵⁾은 그 대표적인 예로, 같은 해 5월 24일에 체결된 국제 협약 “생명공학적 위험의 예방에 대한 규약”³⁶⁾을 유럽공동체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유럽 공동체에는 국제 협약 수준에 맞는 GMO 수출국에 대한 적용 규약이 없어, 이 규칙 제 안이 채택될 경우 공동체 내의 GMO 수출입에 대한 규약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어 2002년 7월에는 유럽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는 유럽회의가 “생명공학적 위험 예방을 위한 카르타젠 규약 결론에 관한 유럽 공동체 차원의 결론에 대한 유럽회의의 결정 제안”³⁷⁾을 제출해 유럽연합의 규범을 국

34)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ve à l’établissement de normes de qualité et de sécurité pour le don, l’obtention, le contrôle, la transformation, le stockage et la distribution des tissus et cellules humains”, *JO*, n° C 227 du 24 septembre 2002, pp. 505-521.

35) “Règ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f aux mouvements transfrontières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JO*, n° C 151 E du 25 juin 2002, pp. 121-128.

36) “생명공학적 위험의 예방에 대한 규약(Prévention des risques biotechnologiques)”은 2000년 1월 29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규약으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과 카메룬, 에쿠아도르 등의 제3세계 국가 등, 총 48개 국가들이 참가했다. 이 규약은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로 얻어진 유전자조작생명체에 대한 이용, 조작, 전이 등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가능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세한 내용은 “Règ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f aux mouvements transfrontières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의 제안설명서 참조.

37) “Proposition de Décision du Conseil concernant la conclusion, au nom de la Communauté,

제사회의 기준에 맞추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회의 최근 입장은 보다 실생활에 접근된 정책 수립과 유럽공동체의 정책을 국제 규범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몇 년 간의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다 강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V. 나오며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유럽의회의 생명윤리 관련 결의들을 살펴본 결과, 유럽의회는 유전공학에 대해 규제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의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 등,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간을 두는 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 내의 생명윤리 논의가 늘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일단 회원국 사이에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법률로 허용한 영국은 생명공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며 생명윤리 결의제안 논의 시, 보다 강경한 입장에 서있는 독일 등의 국가와 대립하곤 했다. 때문에 생명윤리 결의 채택은 독회와 각국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들을 거치는 동안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국의 입장차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일과 스웨덴 등을 포함해 세계 전반적으로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완고한 배아복제 금지법률을 갖고 있던 독일은 2002년 1월 30일, 순수한 의학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영국정부 역시 지난 2000년 8월,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힌 뒤 현재 의회에서 관련법안 수정을 검토 중이다³⁸⁾. 스웨덴 정부 또한 2002년 1월 29일, 치료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기로 결정, 관련 법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³⁹⁾.

이처럼 각국의 입장과 생명공학에 대한 기대치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생명윤리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통일된 생명윤리 관련 결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회원국 내에서 생명윤리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 회원국 간의 입장차이를

du protocole de Carthagène sur la prévention des risques biotechnologiques”, *JO*, n° C 181 du 30 juillet 2002, pp. 258-274.

38)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인간복제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 『Biozine』, 2000년 12월 17일 자.

39) “세계 각국 배아연구 규제완화 움직임”, 『동아사이언스』, 2002년 1월 31일 자.

효과적으로 조율한다면 새로운 요구에 맞춘 생명윤리 관련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로써 생명공학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봉석, 『독일 유전공학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신동일,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서울: 푸른나무, 2001
- 정규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 23호
-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Community Policy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ssessment of the Second and Third Framework Programmes and Guidelines for the Community’s Future R&D Policy”, *Energy and Research Series*, W8, 6-1993
- ROGERS Arthur & Denis Durand de Bousingen, *Une bioéthique pour l’Europe*, Strasbourg : Ed. du Conseil de l’Europe, 1995
- Rose-Marie Lozano, *La protec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dans le domaine de la biomédecin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 Union européenne, Commission européenn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service des entreprises: des résultats du programme esprit*, Luxembo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1996
- “Résolution sur la biotechnologie en Europe: nécessité d’une politique intégrée”, *Journal officie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JO)*, n° C 76 du 23 mars 1987, pp. 25-29
- “Résolution sur les problèmes éthiques et juridiques de la manipulation génétique”, *JO*, n° C 96, du 17 avril 1989, pp. 165-170
- “Résolution sur la fécondation artificielle 《in vivo》 et 《in vitro》”, *JO*, n° C 96 du 17 avril 1989, pp. 171-173
- “Résolution sur le clonage de l’embryon humain”, *JO*, n° C 315 du 28 octobre 1993, pp. 224-225
- “Résolution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dignité de l’être humain à l’égard des applications de la biologie et de la médecine”, *JO*, n° C 320 du 20 septembre 1996, pp. 268-269
- “Résolution sur le clonage”, *JO*, n° C 115 du 14 avril 1997, p. 92-93

- “Résolution législative portant avis du Parlement européen sur la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ve à la protection juridique des inventions biotechnologiques”, *JO*, n° C 286 du 22 septembre 1997, pp. 87-188
- “Résolution sur le clonage humain”, *JO*, n° 34 du 2 février 1998, pp. 164-165
- “Résolution sur le clonage des êtres humains”, Procès verbal du Parlement européen du 7 septembre 2000
- “Décision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ve au sixième programme-cadre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pour les actions de recherche, d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et de démonstration contribuant à la réalisation de l’espace européen de la recherche et à l’innovation (2002-2006)”, *JO*, n° 1513 L 232, pp. 1-33
- “Résolution du Parlement européen sur l’avenir du secteur de la biotechnologie”, n° C 343 du 5 décembre 2001, pp. 292-300
- “Règ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f aux mouvements transfrontières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JO*, n° C 151 du 25 juin 2002, pp. 121-128
- “Conclusions du Conseil et feuille de route du 26 novembre 2002 pour une stratégie sur les sciences du vivant et la biotechnologie”, *JO*, n° C 39 du 18 février 2003, pp. 9-13
-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relative à l’établissement de normes de qualité et de sécurité pour le don, l’obtention, le contrôle, la transformation, le stockage et la distribution des tissus et cellules humains”, *JO*, n° C 227 du 24 septembre 2002, pp. 505-521
- “Proposition modifiée de règ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concernant la traçabilité et l’étiquetage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et la traçabilité des produits destinés à l’alimentation humaine ou animale produits à partir d’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et modifiant la directive 2001/18/CE”, *JO*, n° C 331 du 31 décembre 2002, pp. 308-312
- “Conclusions du Conseil et feuille de route du 26 novembre 2002 pour une stratégie sur les sciences du vivant et la biotechnologie”, *JO*, n° C 39 du 18 février 2003, pp. 9-13